

제 270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(2023.4.7.)

#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

## 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<의안번호 제2023 - 29호>

#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3. 23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2. 3. 24.

## 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전략담당관에서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## 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「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~제12조

## 4. 기금운용 계획

### ▣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'22년도말 조성액 ㉑	'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3년도말 조성액 ㉓=㉒+㉑	비 고
	수입㉒	지출㉔	증감 ㉒=㉓-㉔		
0	251,625	0	251,625	251,625	

### ▣ 자금운용계획

#### ○ 수 입

[단위 : 천원]

기 금 명	구 분	수 입 계 획		
		계	이자수입	기타수입 (기부금 수입)
고향사랑 기금	전년도 수입액	0	0	0
	'23년도 수입액	251,625	1,625	250,000
	<b>증 감</b>	<b>251,625</b>	<b>1,625</b>	<b>250,000</b>

#### ○ 지 출

[단위 : 천원]

기 금 명	구 분	지 출 계 획		
		계	비용자성 사업비	예치금
고향사랑 기금	전년도 지출액	0	0	0
	'23년도 지출액	251,625	0	251,625
	<b>증 감</b>	<b>251,625</b>	<b>0</b>	<b>251,625</b>

## 5. 검토의견

- 이 기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이 기금의 목적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,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2023년도 기부금 목표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,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예금이자율 0.65%를 반영한 1백 6십 2만 5천 원으로 예상하여 2023년도 말에 2억 5천 1백 6십 2만 5천원을 예치하고자 함.
- 향후 2년 정도 기부금을 조성한 후 규모에 따라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## 6. 참고자료

### ● 관련법령 발췌

#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##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(전략담당관) [시행 2023. 1. 1.]

제8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#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